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2022. 9.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표중 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술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쇄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중 "심신 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6) 중 "심신장애자가"를 "심신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목 (8) 중 "립파구증식증"을 "립프구증식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임벨"을 "차임벨"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인당 "품목"별(술/담배/향수/일반물품) 면세범위

-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

술	2병	합산 2ℓ 이하로서 총 US \$400 이하	미화 800달러 이하
담배	- 필연량: 200개비(10갑)		일반 물품
	- 시 가: 50개비		
	- 액 상: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은 반입 제한) ▶ 한 종류만 선택 가능		
향수	60ml		

▶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및 천연자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kg, 총 금액 10만원 이하 (물품별로 수량·종류 제한)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행기간

동반가족

전화번호

국내 주소

해당 사항에 " V " 표시

후대품 면세범위(및면적조율 초과하는 "품목")	있음	없음
• 물품 상세 내역에 뒷면에 기재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	☐	☐

2 원산지

3 미화 환산

4 우리나라로 반입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품 목	물 품 명	수량(또는 중량)	금 액
술			
담배			
향수			
일반 물품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뒷면에 계속 >

98mm X 245mm(약)까지 100g 이내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KOREA CUSTOMS SERVICE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모든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세대의 가족은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생년월일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여행기간	일	출발국가	
동반가족	본인 외	명	선박명
전화번호			
국내 주소			
세관 신고사항		해당 사항에 "V" 표시	
1 휴대품 면세범위(외면 참조)를 초과하는 "품목"		있음	없음
• 품목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		술	담배
2 원산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합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	없음
3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 등(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		있음	없음
[총 금액 :]			
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	없음
가. 총포류, 실탄, 도검류, 마약류, 방사능물질 등 나. 위조지폐, 가짜 상품 등 다. 음란물, 복한 찬양 물품, 도청 장비 등 라. 멸종위기 동식물(영무새, 도마뱀, 원숭이, 난초 등) 또는 관련 제품(응답, 사탕, 악어가죽 등)			
5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없음
가. 동물(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 나.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다.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	없음
가.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본품 등 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다. 세관에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 라.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 마. 출국할 때 "일시수출(반출)신고"를 한 물품 등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뒷면에 계속 >			

1인당 "품목"별(술/담배/향수/일반물품) 면세범위

•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

술 2병 합산 2ℓ 이하로서 총 US \$400 이하

담배 200개비(1022) 이하

향수 60ml 이하

일반 물품

• 다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 (물품별로 수량·종량 제한)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농산물 등 면세범위

농림축수산물(쌀 1kg, 소맥지고기 각 10kg, 그 외 물품 5kg)

한약재(인삼·삼황·백지·가시오가뽕 각 300g, 녹용 150g, 그 외 물품 3kg)

면세범위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

예 시: 술 3병, 담배 1022, 향수 30ml, 시계 1,000달러 범위 시

작성대상은 술 3병, 시계 1,000달러 범위 향수는 면세범위 초과 작성 생략

품 목 물 품 명 수량(또는 종량) 금액

술

담배

향수

일반 물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총 종량: kg, 금액:)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고추(가루 포함) ()kg 인삼(홍삼 포함) ()g

참 개 ()kg 상황버섯 ()g

참기름 ()kg 녹 용 ()g

기 타 ()kg 기 타 ()kg

※ 세관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물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5mm X 245mm(복합지 100g/㎡)